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이만희·배준영·유상범

박성민 · 정희용 · 박준태

박충권 · 김은혜 · 최은석

김희정 · 김대식 · 조지연

유용원 · 김미애 · 곽규택

박수민 · 강대식 · 임이자

구자근 • 박성훈 • 안철수

김승수 · 박덕흠 · 김도읍

이인선 • 인요한 • 송석준

신성범 · 김장겸 · 임종득

엄태영 • 정연욱 • 이성권

김종양 · 김예지 · 안상훈

김정재 · 조경태 · 권영세

정성국 • 유한홍 • 김위상

김 건 · 백종헌 · 신동욱

송언석 · 장동혁 · 조정훈

이종배 · 최형두 · 김태호

서명옥 · 서천호 · 서범수

조배숙 • 박형수 • 서일준

김형동 • 한지아 • 추경호

박상웅 • 이철규 • 김상훈

김민전 · 김상욱 · 유영하

김소희·박수영·최수진 주진우·이종욱·고동진 의원(72인)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적의 침투·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 (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하여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	
생 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단서</u>	<u>다만,</u>
<u>신설></u>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하
	여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